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시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021
----------	------

발의년월일 : 2024.07.05.
발 의 의 원 : 허시영, 김지만,
김태우, 박소영,
손한국, 육정미,
이태손,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의원(10명)

1. 개정 이유

디지털 광고 분야의 기술발전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광고물,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방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기존 건물의 벽면 및 1층 출입구에 간판이 설치된 경우 전광류 및 디지
털광고물 간판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2호)
- 나. 도로, 인도에 설치하는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함(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 다.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물에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함(안 제11조제1
· 2항)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만,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에서,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8. 휴지통

9. 벤치

10. 공공자전거 보관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제1항제4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u></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와 그 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1.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u></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다만, <u>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u></p>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⑩ (생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략)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2. 12. 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 5. (생략)

⑤ (생략)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

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